

과천시공사 갑·을 명칭 지양 지침

제정 2020.02.05. 지침 제13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과천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서 갑·을 명칭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 갑·을 명칭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계약 당사자의 대등한 지위를 명시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공사는 각종 계약서 등에 갑·을 명칭을 사용하는 대신에 당사자의 지위나 성명, 상호 등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적용범위) 공사에서 제공하는 계약서, 협약서, 양해각서 등에 갑·을 명칭이 들어가는 모든 문서를 적용범위로 한다.

제4조(명칭변경) 갑·을 명칭을 대신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명칭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갑”은 계약자 또는 발주처
2. “을”은 계약상대자

제5조(사전협의) 사업부서에서 계약서, 협약서 작성 시 계약부서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6조(홍보) 공사는 관내 민간기업 또는 단체 등도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널리 유도하고 홍보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사 설립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